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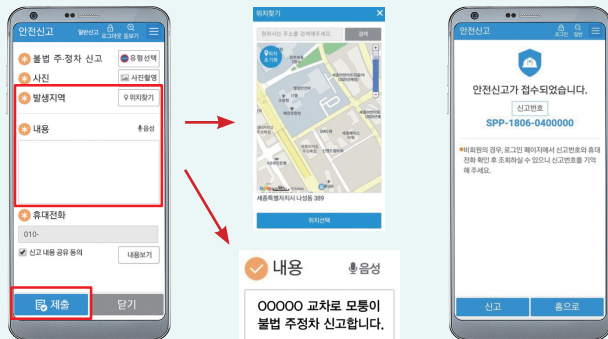
① 안전신문고 앱 설치 ② 안전신문고 앱 실행 → 불법 주·정차 신고 버튼 선택



③ 불법 주·정차 유형선택 → 사진촬영 (시차 1분 이상 신고사진 2장)



④ 신고 위치선택 → 내용작성 → 제출 ⑤ 신고접수 완료



- 소화전 주변
- 버스 정류소
- 교차로 모퉁이
- 횡단 보도

인천광역시 5월 1일부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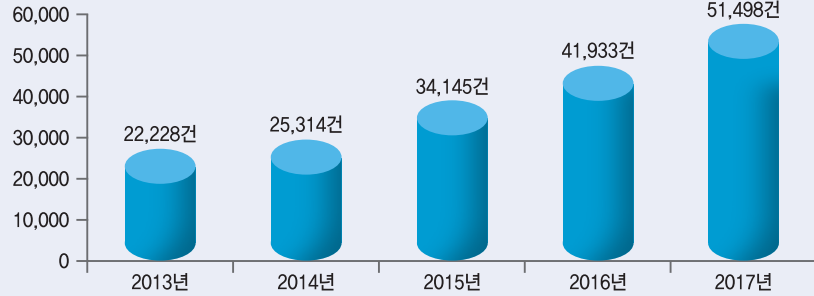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주세요!

불법 주·정차를 주인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 꼭! 바꿉시다.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



※ 출처 :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화재진압 골든타임(최초 발화 후 8분)이 지연되어 화재 사망자 증가 및 대규모 재산 피해 발생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



도로 한복판에서 승·하차하면서 교통사고 위험 및 뒤따르는 차들의 주행을 막아 2차 교통사고 야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들이 차도를 이용하게 되어 교통사고 위험

4개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현장 확인 없이 주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